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카슈랑스 25%를 적용 자산기준 상향〉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29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카슈랑스와 관련 규제	3
2. 개정안의 내용	11
3. 관계 기관 의견	15
4. 검토의견	1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이양수의원 등 25인
2. 제 출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조합에 대하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현재는 100분의 25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1호로 일부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최초 도입)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그런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다른 법률,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2016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정하였고, 그 후 2021년 말에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경제 규모 및 규제 환경 변화 등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한편, 그동안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 3. 기준 1개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22개로 늘어났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5년 말에는 위 규제를 적용받는 조합 수가 136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경제 여건 및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Ⅲ. 검토의견

1. 방카슈랑스와 관련 규제

가. 방카슈랑스의 개념 및 도입배경

방카슈랑스(Bancassurance)¹⁾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함)이 보험회사의 대리점(또는 중개사)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고객 측면에서 보험 가입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은행 측면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 증대, 보험사 측면에서는 판매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8월에 도입되었음.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

구 분	취지 및 기대효과
고객 측면	■ 원스톱 금융거래로 보험 가입 편리성 제고 ■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가입
은행 측면	■ 업무 다각화와 수익성 제공 ■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보험사 측면	■ 고객기반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 판매비용 절감

1)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을 결합한 단어임.

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는 「보험업법」 제91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금융위원회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에 구체화되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판매상품 제한 ② 판매비율 제한 ③ 판매인원 제한 ④ 취급업무 제한 ⑤ 모집방법 제한이 있음.

[방카슈랑스 관련 주요규제]

규제 현황	최초 규제 내용('03)	현행 규제 내용
①판매상품 제한	■저축성, 제3보험 등 일부 상품만 허용 ※ 종신·자동차 보험 등 판매 불가	좌동
②판매비율 제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1개 보험사 판매비율 <u>49%</u> 이내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1개 보험사 판매비율 <u>25%</u> 이내
③판매인원 제한	■점포당 보험판매 인원 2명 이내 ('06 3. 31까지 적용)	■점포당 보험판매 인원 2명 이내 (영구 적용)
④취급업무 제한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좌동
⑤모집방법 제한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 금지 ■점포 외부에서 영업 불가	좌동

이러한 규제는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방카슈랑스의 대표적 부작용인 ‘기존 보험영업조직 기반 붕괴’와 ‘불완전판매³⁾’ 등을

2)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음.

한편,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방카슈랑스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보험업계의 강한 우려로 인해 2005년 3월 및 2008년 3월 두 차례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판매비율 및 판매인원 제한 규제 등이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방카슈랑스 규제 변화과정]

방카슈랑스 도입('03.8월)	방카규제 강화('05.3월)	현행 방카규제('08.3월)
■ (모집비중) 49% 이하 ■ (모집인원) 점포당 2인 이내 - '06.3.31까지 한시적 적용 ■ (모집상품) 저축성, 제3보험 등 일부 상품만 허용하되 점진적 확대 - '07.4월까지 3단계에 걸쳐 방카 모집상품 완전 허용 계획	■ (모집비중) 25% 이하 ■ (모집인원) 점포당 2인 이내 - '08.3.31까지 기간 연장 ■ (모집상품) 허용 연기로 최초 일부 상품만 판매 - 개인보장성, 자동차보험 허용시기 연기 - 단체/기업보험 허용 유보	■ (모집비중) 25% 이하 ■ (모집인원) 점포당 2인 이내 - 영구연장 ■ (모집상품) 허용 철회로 최초 일부 상품만 판매 - 개인보장성, 자동차보험 및 단체/기업보험 허용 철회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은행 등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야 함.

2024년 현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방카수수료율)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 16개, 증권 8개, 카드 7개를 합한 31개임.

모든 농·축협 조합(1,111개)은 개별 법인으로서 각각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현황]

구분	은행	증권	저축은행	카드	합계	농·축협조합
개수	16	8	0	7	31	1,111

* 생·손보협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공시, 저축은행은 언론보도 참고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한편,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3개사⁴⁾임.

[방카슈랑스 제휴 보험사 현황]

구분	상품 비중	제휴 보험사	실제 상품 판매사
생명보험 (22개사)	보장성(48.7) :저축성(51.3)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DGB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KB생명, BNP파리바카디프, DB생명, IBK연금,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 ABL생명, AIA생명, 처브라이프, 푸본현대생명, 라이나생명, 농협생명	처브라이프 제외 21개사
손해보험 (13개사)	보장성(98.5) :저축성(1.5)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메리츠손보, 신한EZ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라이나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 자료: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제출자료('24.10.25) 재구성

현재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실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팔고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상당수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축소 또는 중단⁵⁾하여 실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장기보장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4개사(농협손보,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뿐임.

이는 보장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저축성보험⁶⁾

4)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22개 생보사는 모두 방카슈랑스에 참여 중이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9개 손보사(재보험사 제외) 중 13개 보험사가 방카슈랑스에 참여 중임.

5) 삼성·한화·흥국·메리츠는 기업성보험의 갱신계약만 취급, 하나·신한EZ는 계열은행에서만 판매, 롯데·MG·라이나손보는 내부적인 이유로 방카사업 중단

6)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을 주로 취급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이 전체 보험 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023년 6월말 기준)에 불과하고, 저축성보험은 2023년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로운 회계제도(IFRS17)⁷⁾상 부채로 인식되어 회계상 불이익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이 전체 보험 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에 이르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상당하여 만기고객의 재유치 및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영업을 유지할 유인이 여전한 것으로 보임.

[2023년 6월말 기준 보험사별 보험 가입 경로 비중]

구분	방카슈랑스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기타
생보사	19.4%	32.1%	25.4%	23.2%
손보사	1.9%	44.4%	27.8%	25.8%

※ 자료: 보험연구원(KIRI), '2024년 보험산업 과제'(2024.01.19.)

7)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임 (한경 경제용어사전)

다.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농·축협 조합의 경우 2011년까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자⁸⁾로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음.

그런데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조합의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축협 조합도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⁹⁾되어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반면,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현재 공제사업자로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공제와 보험 비교]

구분	공제	보험
근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사업주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보험회사
경영여부	생보·손보 경영	생보·손보 경영 금지
감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공제사업감독기준, 공제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8)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1304호, 2012.2.10.]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3. (생략)

4. 공제사업

제61조(공제 규정) ①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① 농업인이 농·축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기존의 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② 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¹⁰⁾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제10522호, 2011. 3. 31.)에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특례를 두게 된 것임.

['12 사업구조개편 전후 농협의 보험사업 체계]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12.3~)
농·축협 조합	공제사업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 규제 5년 유예)
농협 중앙회 보험 분사 농협 은행	공제사업자 (생명·손해 겸영)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공제사업자(판매채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 규제 즉시 적용)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다만, 방카슈랑스 규제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는 25% 판매비율 규제(이하 ‘25%룰’이라 함)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되 판매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2017년 3월부터 25%룰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10) 조합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제1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금융(제2금융권)으로서 은행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수신과 여신을 주 업무로 하는데 반하여 조합은 제한된 구역에서 경제사업, 교육사업, 신용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경영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함.

이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상품(개인 저축성보험¹¹⁾,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간병 등 제3보험¹²⁾)만 모집 가능한 은행 등과 달리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에 대하여 기존에 공제사업으로 운영하던 상품(종신보험, 책임보험 등)¹³⁾도 모집이 가능하도록 예외가 인정¹⁴⁾되었음.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주요특례]

방카슈랑스 규제 내용	농협보험 판매	민영보험사 보험 판매
① (모집인원 : 2인 제한) 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	비적용 ※5년 유예	적용
② (모집방법 : out-bound 금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모집 +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	비적용 ※5년 유예	적용
③ (모집비중 : 25% rule) 자산 2조원이상 조합은 1개사 상품이 모집총액의 25% 초과 불가	적용	적용
④ (모집상품) 개인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중 제3보험(질병·상해·간병)만 모집 가능	비적용 ※기존 공제 수준 가능	적용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10.25)

11)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12) 암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의 판매 가능하며, 특별약관(입원비, 수술비지급 등)이 부가되지 않은 형태의 상품만 판매 가능

13) [방카슈랑스 허용상품과 농협보험 판매 상품 비교]

구 분	민영보험사	농협보험
생명보험	방카 허용상품만 판매 가능 개인저축성보험, 제3보험(사망보장 제외, 특약부가 불가)	방카 허용상품 + 기존 공제수준의 보장성 상품 (종신보험, 제3보험(특약포함))
손해보험	방카 허용상품만 판매 가능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제3보험(사망보장 제외, 특약부가 불가)	방카 허용상품 + 기존 공제수준의 보장성 상품 (책임보험, 보증보험, 날씨보험, 화재보험(주택외), 단체상해보험 등)

14) [조합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범위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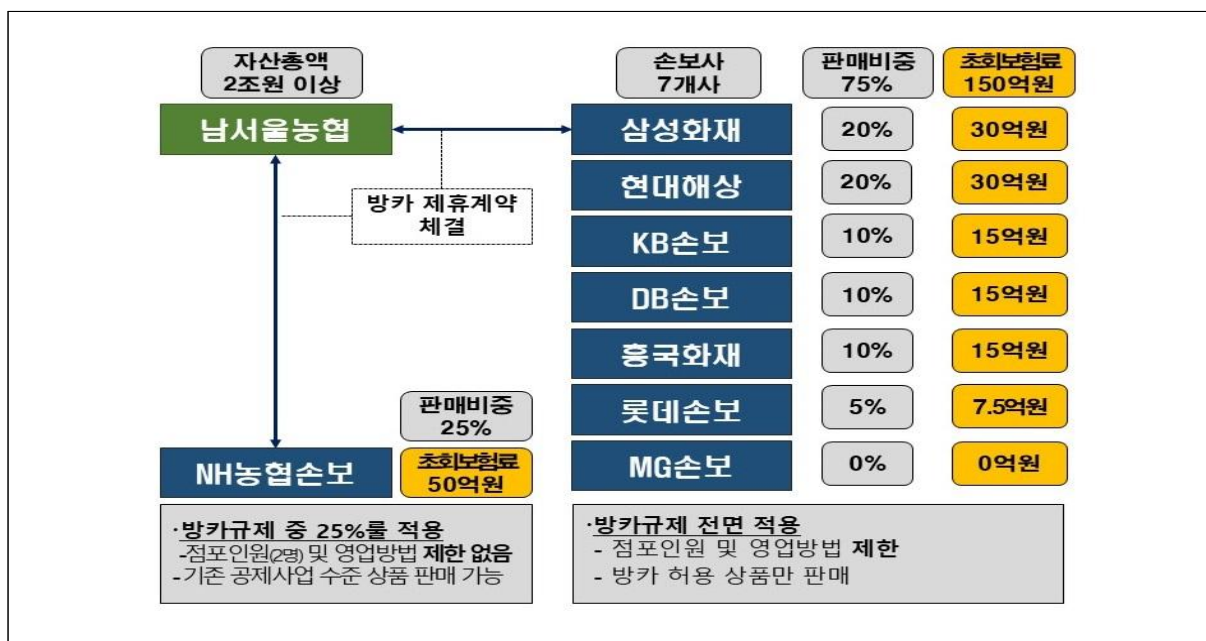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남서울농협이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8개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어 보험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농협손해보험이 아닌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25%룰, 점포인원, 영업방법 등)되어 방카슈랑스에서 허용하는 저축성보험과 질병·상해·간병 등 제3보험만 판매 가능함.

반면, 남서울농협이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규제 중 25%룰만 적용받게 되고, 방카슈랑스 허용상품 외에 기존 공제사업에서 제공하던 상품도 판매가 가능하며, 점포인원 및 영업방법에도 제한이 없음.

[8개 손보사 가정 시 농·축협 조합 방카슈랑스 예시]



※ 자료: 생명보험협회 제출자료('24.10.25)

한편, 현재 25%룰을 제외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의 유예기간은 5년씩 두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7년 3월 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2. 개정안의 내용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단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농업정책보험은 제외)¹⁵⁾에 대하여 25%를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25%를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5) 「보험업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2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년까지: 100분의 25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	④ ~ ⑩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⑨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업법」 제1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일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관계 기관 의견

가. 관계 부처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모집비중규제 적용기준이 되는 조합 자산규모 2조원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간 국가경제 및 기업성장 등을 감안할 때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농협의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가 금융권의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25%를 적용 적용대상 조합의 자산규모를 상향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역시 관련 업계 합의가 선행된 이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¹⁶⁾임.

나. 관계 협회 등 의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①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자산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점, ② 민영보험사는 농업인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하고 손해율이 높은 농업 시설물 등의 보험가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 상품 가입 시 조합에서 계약 유지·관리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5%률의 적용을 받는 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편익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16) 한편,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손해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철수로 인해 농축협과 신규 협약 체결 가능 보험사가 4개뿐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25% 모집비중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련 업계 등과 모집비중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세부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 중임.

반면, 방카슈랑스에 참여 중인 타 생명보험사¹⁷⁾는 ① 자산규모 기준 상향으로 25%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이 증가할 경우 농협보험 상품 몰아주기가 심화되어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② 「보험업법」 상 모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¹⁸⁾하고 있어 조합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③ 조합에 예외를 인정한 것은 농어촌의 지역적 한계와 고령층의 보험 접근성 등을 위한 것이나 자산 2조원 이상 조합은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당초 취지에 상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한편,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에 한하여 25%룰의 적용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다만, 조합에 대한 25%룰 적용 예외범위의 확대가 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전반에 영향을 미쳐 방카슈랑스 규제의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임.

17) 2024년 현재 4개 손해보험사(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와 9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IBK연금, 농협생명)

18)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후 략>

4. 검토의견

가. 방카슈랑스 적용 농·축협 조합 등 현황

농·축협 조합에 대하여 25%를 규제를 도입할 당시('12.3.2.)에 자산 2조원 이상 조합은 1개소¹⁹⁾였음.

이후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4년 현재 25%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은 2023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22개소임.

2024년 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합은 27개이고, 2025년 말에는 34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현재 22개 조합 중 순천농협을 제외하면 21개가 도시조합(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직전월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조합)이고, 향후 추가 예정인 13개의 조합도 안동농협을 제외하면 도시조합에 속함.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인 2035년까지 25%를 적용받게 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조합은 현재보다 114개소 증가한 136개소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²⁰⁾되고 있음.

한편, 농·축협 조합 3개소(서울축산, 영등포, 송파)는 2025년 말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19) 서울축산농협으로 당시 자산 규모는 2조4,056억원이었음.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축협조합 보험사업 발전방향 연구 - 모집비중 규제를 중심으로-」, 2023. 12

[자산 2조원 이상 조합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사무소명	현재 총 자산 (‘24.9월말)	2024년 말 총 자산(추정)	2025년 말 총 자산(추정)	25%를 적용 연도	비고
1	서울축산농협	4,981,173	5,046,557	5,210,680	2012	도시조합
2	영등포농협	4,469,276	4,864,481	5,245,656	2018	도시조합
3	관악농협	3,850,024	3,344,971	3,397,347	2018	도시조합
4	남인천농협	3,292,869	3,258,092	3,381,671	2017	도시조합
5	송파농협	3,230,793	4,200,127	5,130,177	2018	도시조합
6	남서울농협	3,214,075	3,380,387	3,535,383	2020	도시조합
7	수원축산농협	3,187,287	3,120,185	3,207,405	2019	도시조합
8	영동농협	3,164,887	3,163,916	3,370,618	2021	도시조합
9	수원농협	3,128,834	2,893,452	2,954,843	2015	도시조합
10	순천농협	3,029,986	3,522,075	3,893,998	2019	
11	중앙농협	2,797,099	3,104,582	3,356,351	2022	도시조합
12	서울강동농협	2,788,496	3,633,691	4,134,041	2020	도시조합
13	제주시농협	2,722,407	2,768,618	2,952,214	2017	도시조합
14	서서울농협	2,657,113	2,746,069	2,844,283	2022	도시조합
15	서울우유농협	2,608,192	3,560,014	4,049,699	2019	도시조합
16	대구축산농협	2,556,906	2,670,164	2,819,493	2018	도시조합
17	북서울농협	2,530,473	2,452,698	2,548,237	2023	도시조합
18	남동농협	2,463,165	2,342,486	2,418,524	2022	도시조합
19	태안농협	2,444,149	2,606,598	2,909,594	2023	도시조합
20	서울경기양돈농협	2,245,622	2,307,390	2,404,687	2023	도시조합
21	군자농협	2,209,107	2,141,409	2,222,155	2024	도시조합
22	부경양돈농협	2,082,133	2,325,701	2,515,280	2024	도시조합
23	한국양계농협	2,167,281	1,928,993	2,037,688	2025(예정)	도시조합
24	동서울농협	2,156,294	2,044,896	2,127,407	2025(예정)	도시조합
25	안동농협	2,079,595	2,042,050	2,120,091	2025(예정)	
26	강서농협	2,003,830	1,986,321	2,048,265	2025(예정)	도시조합
27	안양축산농협	2,001,938	1,999,373	2,077,569	2025(예정)	도시조합
28	한국양봉농협	1,979,184	2,278,174	2,454,294	2026(예정)	도시조합
29	안양농협	1,972,889	1,959,527	2,049,921	2026(예정)	도시조합
30	청주축산농협	1,968,623	2,112,140	2,261,900	2026(예정)	도시조합
31	전주농협	1,966,837	2,085,812	2,172,088	2026(예정)	도시조합
32	청주농협	1,801,748	1,902,991	2,022,665	2026(예정)	도시조합
33	경서농협	1,770,811	1,898,683	2,033,150	2026(예정)	도시조합
34	김해농협	1,706,949	1,905,176	2,043,375	2026(예정)	도시조합

* '24,'25년말 총자산(추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2년말 조합 총자산을 근거로 전망한 추정치이며, 실제 '24.9월 총자산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개정안에 따라 25%를 적용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할 경우 2024년 10월 현재 25%를 적용받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게 됨.

다만, 서울축산농협의 자산규모는 연말에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부터 25%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2026년에는 2025년 말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 조합(서울축산, 영등포, 송파)이 25%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5%를 적용 자산기준을 4조원으로 상향할 경우 현재 기준 2개 조합이, 3조원으로 상향할 경우 10개 조합이 25%의 적용대상이 됨.

나.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한 자산기준 현실화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²¹⁾에 규정된 25%를 적용 자산기준(2조원 이상)은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국내 GDP가 2.4배 증가하는 등²²⁾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감안할 때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21)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후 략>

22) ('03년→'22년) GDP 7,026억\$→16,733억\$(2.4배) 최저임금 2,275원→9,160원(4배)
시중은행 자산 1,027조원→3,721조원(3.6배) 국내 보험사 자산 208조원→1,175조원(5.6배)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5조원이고 같은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의 경우 국내 GDP의 0.5%(당시 10조원 수준)로 설정²³⁾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그 기준을 2002년 2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온 온 것임.²⁴⁾

이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²⁵⁾에서도 자산규모 5조원을 대상 지정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자산기준 5조원 이상 규제 법률 현황]

법률	자산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국내 GDP의 0.5% 이상 ※ 약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금융회사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후 략>

24) '02년 2조원 → '08년 5조원 → '16년 10조원 → '21년 국내 GDP의 0.5%

2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913호, 2024.1.2.> 제6조(책무구조도 마련·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 및 종합금융회사: 이 법 시행 이후 1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1년

법률	자산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5조원 이상	지배구조 적용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 자료: 관련 법률 재구성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강화된 규제의 적용이 필요한 대상의 자산 규모를 5조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5%률의 적용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자산총액 2조원 기준을 조합에 대하여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와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현행 자산기준이 방카슈랑스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바, 금융업계 자체에서 자산기준 상향과 관련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임²⁶⁾.

한편,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농촌지역의 영세한 조합이 규모화를 위해 합병을 진행할 경우 25%를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조합 간 합병 추진을 지연시키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6) 단일법인으로서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한 은행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가 192조원을 상회하고, 조합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영세한 저축은행의 경우 사실상 방카슈랑스 영업에서 철수하고 있어 금융업계에서 자산기준의 상향에 대한 논의를 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임. 다만, 은행 등은 손보사 방카사업 축소 및 비이자수익 확대 필요 등을 이유로 모집규제비중을 상향하는 25%률 완화에 대해 계속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다. 농업인의 편익 및 조합의 수익 관련

먼저, 농업인의 입장에서 조합이 25%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첫째, 농·축협 조합원은 조합의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조합의 수익은 출자배당과 조합원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야의 이용실적 등을 토대로 한 이용고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되므로 자신이 출자한 조합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임.

그런데 25%룰로 인하여 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민영보험사의 상품가입을 권유받거나 다른 조합에서 농협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됨.

특히 농협손해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축사·온실과 같은 농업 시설물과 농가주택 등에 대하여도 최대한 인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 민영보험사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25%룰이 적용되는 경우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조합이 아닌 25%룰이 적용되지 않는 인근 조합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음²⁷⁾.

[민영보험사의 인수 제한 보험목적물]

보험상품	보험목적물
주택화재보험	목조주택, 농가 소형창고(농기계 보관)
일반화재보험	축사(소/돼지), 양계장 등
	유리온실, 작물 재배실 등
	농업인 수탁 양곡, 정부 추곡수매 양곡
공장화재보험	도축장, 농축산물 가공 공장

※ 자료: 농협손해보험 제출자료('24.10.25)

둘째, 25%룰에 따르면 조합은 농업인 등을 상대로 민영보험사의 상품을 75% 이상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농업인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민영보험사는 농협보험과 달리 농업인을 위험직군으로 분류²⁸⁾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가입한도나 보장금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농협보험과 민영보험사 농업인 보험료 비교(예)]

구 분	비위험	중위험(위험2급 ~ 위험3급)
농협생명 재해보험	30,500원	43,000원
C화재 건강보험	46,865원	54,068원

* 40세 남성, 10년납 월납계약 가입 기준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27) 조합의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금융기관종합보험, 현금도난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공장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지게차배상책임보험 등)을 사실상 농협손해보험만이 제공하고 있는데, 25%룰 준수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상품을 자기계약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근 자산 2조원 미만 조합이나 타 보험사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하여야 하는 실정임.

28) 농업인 위험등급: 농협보험(비위험) / A생명(고위험), B생명(중위험), C화재(중위험)

[농협보험과 민영보험사 보장금액 비교(예)]

구 분	농협보험(비위험)	민영보험사(위험2급~위험3급)
재해 수술	100만원	30 ~ 60만원
재해 입원	7만원	2 ~ 3만원
사망(일반,재해)	25억원	3 ~ 10억원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또한, 조합에서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계약 변경 등 계약 유지·관리업무의 처리가 불가능²⁹⁾하여 보험과 관련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바, 농업인의 불편을 야기하게 됨.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2개로 전체(1,111개)의 1.8%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수도권에 분포³⁰⁾하여 대다수 농업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2026년에 25%률을 적용받게 될 조합은 34개에 이르고, 비수도권 지역 조합의 개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³¹⁾되고 있음.

다음으로, 25%를 규제 적용에 따라 보험사업이 위축되어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3년을 기준으로 25%률을 적용받는 조합의 경우 해당 규제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보험가입 건수와 수수료가 급격히 감소(보험

29)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는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민영보험사가 조합에 위탁할 수 없는 반면, 농협보험의 경우에는 조합원 및 고객 등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예상되어 조합이 해당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30) 서울 12개, 경기인천 6개, 대구 1개, 순천 1개, 경남 1개, 제주 1개

3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조합 추이]

구분	2024	2025 추정	2026 추정
수도권(개)	18	22	25
비수도권(개)	4(18%)	5(18.5%)	9(26.5%)
합계(개)	22(100%)	27(100%)	34(100%)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가입 건수 78.4%, 보험수수료 63.6%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규제 전후 조합 보험수수료 등]

구 분	규제적용 전 (직전년도)	규제적용 후 (‘23년)	감소율(감소건, 액수)
보험가입 건수	80,895건	17,467건	△78.4%(△63,428건)
월납환산보험료	97.6억원	30.5억원	△68.8%(△67.1억원)
보험수수료	486.8억원	177.4억원	△63.6%(△309.4억원)

* 2023년 규제적용 20개 조합, 농업정책보험은 제외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5%룰이 조합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규제 대상 조합 20개소의 보험수수료 감소액은 1,170억원으로 추정됨.

또한, 향후 2035년 말 기준 25%룰을 적용받게 되는 조합이 136개로 증가할 경우 보험수수료 예상 감소금액은 총 6,86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조합의 경영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반면, 2023년 25%룰 적용 조합을 통한 민영보험사의 보험모집 건수는 전체 민영보험사 보험모집의 0.01%³²⁾, 조합을 통한 민영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전체의 0.02%³³⁾로, 25%룰 적용 조합이 감소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32) [2023년 민영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

구 분	생명	손해	합 계
전체 민영보험사 (A)	14,525,202건	90,930,307건	105,455,509건
농축협 제휴 민보사 (B)	5,522건	6,971건	12,493건
비중 (B/A)	0.038%	0.008%	0.012%

33) [2023년 민영보험사 수입보험료]

구 분	생명(백만원)	손해(백만원)	합 계(백만원)
전체 민영보험사 (A)	224,814,986	122,957,390	347,772,376
농축협 제휴 민보사 (B)	70,820	11,963	82,783
비중 (B/A)	0.032%	0.010%	0.024%

* 수입보험료는 해당기간 중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임.

※ 자료: 농협생명보험 제출자료(‘24.10.25)

라. 종합의견

일부에서는 25%를 적용 자산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업계와의 합의 선행 필요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을 감안한 자산총액 규모의 현실화 필요성, 조합원인 농업인의 편익 보장, 방카슈랑스 보험 모집이 조합 및 민영보험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5%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415